4.3.8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

제정 2000. 04. 21.
개정 2006. 10. 19.
개정 2007. 12. 27.
개정 2019. 07. 1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와 산업체간의 위탁교육을 실시·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업체의 범위) 산업체라 함은 본 대학 학칙 제15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산업체로서 각 호의 산업체를 말한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(사회복지법인포함)
2. 공보처에 등록된 신문사, 방송국
3.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규정된 각급학교
4.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
5. 의료기관
6. 금융기관
7. 국세청에 등록된 상시 5인 이상 고용 산업체
8. 자영업자

제3조(위탁형태) 위탁형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단독위탁 : 산업체가 단독으로 소정의 인원을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한 경우
2. 연합위탁 : 2개 이상의 산업체가 연합하여 대학에 학과별로 위탁한 경우

제2장 교육과정 운영

제4조(학생수 및 학급편성) ① 위탁학생입학인원은 교사 확보율이 50%이상이고 교원확보율이 50%이상인 학과는 모집단위별 신입학정원(주·야 중 많은 쪽)의 5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.

② 위탁생은 40명이하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별도 학급편성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 대학 당해 학과 입학정원의 10%(기존 정원의 위탁생 포함)까지 혼합 편성할 수 있다.

③ 위탁학생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5조(설치학부(과)) 본 대학에 설치된 학부(과)를 원칙으로 한다.

제6조(교육과정의 편성·운영) 위탁생을 별도의 학급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대학과 산업체가 협의하여 별도의 교육과정

을 개발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선발기준) ① 위탁생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(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)로서 모집당시 산업체에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② 위탁생은 산업체의 추천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별도로 인정한 신·편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
③ 〈삭제〉

제8조(학사관리) ① 위탁생에 대한 학사관리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한다.

② 위탁생이 본인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하게 될 경우 입학 취소 또는 제적처리할 수 있다. 단, 산업체 도산,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와 타 산업체로 전직한 경우에는 대학내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학업을 할 수 있다.

제9조(교과목 이수) 위탁생의 교과목 이수는 본 대학 학칙에 의한 졸업소요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0조(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) ①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위탁산업체의 책임하에 본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위탁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는 당해 학부(과)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되,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요원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제11조(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) ① 산업체와 본 대학의 산학협동교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동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육과정 및 교재 공동개발 참여 및 지원
2.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개발과제의 발굴과 교수에 의한 위탁연구 또는 산업체 임직원이나 연구원과의 공동연구 추진
3. 정규과정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의 추진
4. 교육용 실험실습시설의 공동개발 및 교육용 기자재 기증
5.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협력

② 산업체내에 강의실 또는 실험실습 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위탁생만으로 편성된 별도 학급의 강의 또는 실험실습 교육을 산업현장에서 할 수 있다.

제12조(강사위촉) 위탁교육의 강의는 전임교원이 강의를 전담하되,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산업체 임직원 등 적격자를 본 대학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또는 강사임용등에관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9.07.16〉

제3장 위탁교육심의위원회

제13조(구성) ① 위탁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위탁교육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산업체 임직원 및 본 대학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(임명)하되, 위원장

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총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③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14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위탁의뢰 산업체의 적부
2. 위탁생의 선발기준
3.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
4. 위탁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
5.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
6. 학교와 산업체의 상호지원
7. 기타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

제15조(의결)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〈제1호 서식〉〈개정 2019.07.16〉

위 탁 교 육 계 약 서

(　　)와(과) 초당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의 목적은 (　　)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초당대학교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.

제2조(위탁의 과정과 분야별 인원)

1.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학사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.
2. 위탁의 분야별 위탁생수는 다음과 같다.

연도	모집단위(학과)	위탁생 수	비　고

제3조(위탁생의 자격) 신입학은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자, 편입학은 전문대학·대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모집당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로 한다.

제4조(위탁생의 선발과 입학)

① 위탁의 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.
② 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.
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대학이 정한다.

제5조(위탁생의 학급 편성) 위탁교육은 40명 이하로 별도학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과정의 편성) ① 본 계약에 의거 위탁생을 별도 학급으로 편성한 경우에는, 대학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.
② 별도 교육과정을 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를 본 계약의 별표로 한다.
③ 별도 교육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.

제7조(산업체 임직원의 교수요원활용) 위탁 산업체 임직원 중 교수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체 겸임교원 또는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8조(교육비 및 등록) ① 위탁생의 교육비 납부액은 대학의 학생납입급 수준으로 하되, 하향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위탁생의 신분) 본 약정에 의거 입학이 허가된 위탁생은 초당대학교의 학생 신분을 갖게 되며, 학칙의 적용을 받는다.

년　　월　　일

(산업체)　_____　대표 _____ (직인)

(학　교)　초 당 대 학 교　총　장　　(직인)

〈제2호 서식〉

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지원서

<table>
<tr><td>지원
구분</td><td>신입 (　　)</td><td>편입 (　　)</td><td>수험번호
(대학기재란)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 원 학 과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15">지

원

자</td><td>성　　명</td><td colspan="2">한글</td><td colspan="2">한자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4">사 진
5㎝×4㎝</td></tr>
<tr><td>주민등록
번　　호</td><td colspan="4">-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4">우　　-
전 화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출신
대학
(교)</td><td colspan="4">대학(교)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(학)과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년　　월　학년(졸업, 졸업예정, 수료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성적</td><td colspan="2">총 취득학점</td><td colspan="2">평점평균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학점</td><td colspan="2">취득성적/기준평점
/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직장</td><td>직장명</td><td></td><td>부 서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직　위</td><td></td><td>근무년수</td><td colspan="3">년　　월</td></tr>
<tr><td>전　화</td><td></td><td>상시
고용인원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주　소</td><td colspan="5">(　　-　　)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주요
경력</td><td>업체명</td><td colspan="3">재직기간</td><td colspan="2">재직년월일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3">년　월　일 ~ 년　월　일</td><td colspan="2">년　월　일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3">년　월　일 ~ 년　월　일</td><td colspan="2">년　월　일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3">년　월　일 ~ 년　월　일</td><td colspan="2">년　월　일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3">년　월　일 ~ 년　월　일</td><td colspan="2">년　월　일</td></tr>
<tr><td>첨부
서류</td><td colspan="6">①위탁계약서　　②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각 1부
③재직확인증명서 1부　　④ 연금공단이 발급한 가입확인서 1부</td></tr>
<tr><td colspan="7">본인은 귀 대학교에 산업체 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지원자 성명 :　　(인)서명

초 당 대 학 교 총 장 귀하　　접수자 확 인</td></tr>
</table>